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내 용

「도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의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에서는 도로의 부속물 중 하나인 과속방지턱¹⁾을 아래 [표1]과 같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1]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과속도로 설치 현황

구분	광주광역시 (○○○○본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개소	237	306	818	405	568	921

※ 자료 : 광주광역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1. 설치불가지역에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속방지턱 편)」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에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1)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 가능)

[표2]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4)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
|---|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보조간선도로에 231개소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2. 과속방지턱 유지 관리 부적정 등

또한 같은 지침에 따르면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에는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을 도색하여야 하며, 통행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속방지턱이 금이 가거나 부분적으로 깨지는 현상, 색상이 퇴화되어 시인성 확보가 부족한 경우, 표지 등이 파손되었거나 주위 여건 등으로 인하여 가려져 있는 경우 과속방지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히 보수 또는 대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중 일부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시인성 도료가 퇴색되어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속으로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행하는 보행자 및 자동차에게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속방지턱 본래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과속방지턱 설치 구간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1,532개소)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면 도색이 퇴화되거나 파손되어(166개소)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과속방지턱을 보수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

[그림]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 퇴화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 동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
 광산구청장은

[시정] 보조간선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고, 교통안전표지 설치, 퇴화 및 파손된 과속방지턱의 보수 또는 교체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